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센터 운영의 경험과 시사점

함영주 (중앙대 법전원 조정센터 조정총괄위원)

I.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사건 회부 및 중앙대 조정센터에서 작성한 조정합의서의 효력범위

중앙대 조정센터는 고려대, 성균관대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부하는 조정사건을 법학전문대학원 단계에서 담당하는 법원의 외부연계형 조정기관의 하나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 회부되는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여타의 외부조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외부연계형조정사건 중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이나 소송제도가 좀 더 많이 포함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부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보내는 항소심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어 1심 소제기 후 소송진행 전인 사건이 위주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회부사건에 비해 법률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학자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제1심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단계에서 회부된 조정사건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의 관점에서 좀 더 관심을 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항소심 조정사건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의 효력과 조정의 관계,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주문과 이유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조정합의서의 효력(특히 집행력·기판력), 일부항소의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의 조정합의서의 효력과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부분과의 관계 및 이들 간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의 해결방법 등 소송법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다.

특히 민사조정법 제29조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규정과 이와 바로 연결되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 및 준재심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외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규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정절차 체계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조정절차의 제도면에서의 정합성과 논리성의 측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던지고 있다.

즉, 판결을 주문과 이유로 엄격히 구별하여 판결의 효력을 달리 부여하는 우리의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위 일련의 규정들에 의하여 외부연계조정기관의 조정합의서(조정조서를 법원이 조정갈음결정으로 재판상 화해로 만드는 방식이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함)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한, 조정합의서는 판결서와 유사하게 또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제도는 그 본질이 외국의 많은

나라들에서 말하는 조정(mediation)이 아니라 일종의 재정(裁定), 재판(adjudication) 또는 conciliation[1]으로 분류되는 조정이라고 한다.

중앙대 조정센터의 조정사건은 항소심 조정이 아니므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일부 사건의 경우처럼 제1심 판결문의 효력까지 고민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대 조정센터 조정사건에서의 합의서 역시 법원에 조정결과보고서의 형태로 제출되고 다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형태로 보내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판결문에 준하는 형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계기관의 총괄조정인을 통하여 집행[2]이 불가능한 조정합의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중앙대 조정센터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작성한 조정합의서가 법원의 조정갈음결정절차를 거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중앙대 조정센터 조정사건의 경과와 세부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사법연수원 ADR교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conciliation이라고 하여 재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소개한다. 재판의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에는 동의하나 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이 conciliation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conciliation이라는 용어를 민사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집행 또는 강제집행은 법원의 기관을 통하여 국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건의 합의 후 임의이행으로 마무리되는 조정절차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임의이행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법원의 기관이 동원되어야 하는 집행력을 부여하거나 기판력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은 조정절차가 당사자가 주도하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민사조정절차에 대한 논의에서는 조정과 재판절차를 엄격히 구별하는 학자들까지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증을 해 두는 공증제도와 유사한 역할 또는 집행력 만큼은 인정하자는 견해를 취한다;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 제1호, 2007, 308~310면.

Ⅱ. 중앙대 조정센터 조정사건 접수 및 진행 통계

1. 조정사건 접수 및 진행

연도/회부일 기준	조정회부	조정사건 진행(처리) 현황				비 고
		조정불응	기일전 합의	기일내 합의성립	합의 불성립	
2013	21	2		9	10	불성립 중 조정갈음 결정 1건
2014	21	2		7	12	
2015	27		2	10	15	2016년 초부터 기일 전 합의 통계작성 시작
2016	17	2	2	3	10	조정불응 중 1건 피고 연락 불능
2017						현재 진행 중인 사건 0건
합계	86	6	4	29	4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센터의 사건은 지금까지 총 86건이 접수되어 6건을 제외한 80건이 전화회의(전화조정) 또는 조정실에서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다루어졌다. 전화조정을 의미하는 기일전 합의를 포함하여 전체 합의성립은 33건 합의불성립은 47건으로 합의성립비율은 다른 조정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 안내과정에서 합의성립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안내를 하므로 전체 사건 중에 합의가 성립한 비율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조정사건은 사건의 성격이나 당사자들의 성향에 따라 합의성공률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조정사건의 접수 건수 및 진행(처리) 건수 추이 중 특이 사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동작구와 관악구 등 중앙대 교정(흑석동 캠퍼스)에서 멀지 않은 지역의 사건을 위주로 법원의 사정에 따라 회부되다가 2016년 중반 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담당자의 요청으로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에 방학 기간 중에는 조정회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의견수렴 당시 중앙대 조정센터 총괄조정인이던 필자는 방학 중 사건의 조정회부는 중앙대의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매달 3건을 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중앙대학교 법전원의 교원의 수가 대형 법전원의 교원의 수보다 적은 점도 있고 법전원 교수들의 경우 담당업무가 많아 조정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회부 방식의 변경으로 2016년의 조정사건은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조정위원 중 중앙대 법전원 교수들의 경우는 전공에 따라 민사사건인 조정회부사건을 담당하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정보고서 회신기일(총 45일 실제는 30일 정도)을 지키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반복참가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조정사건을 실제 담당하는 교수는 소수였고 중앙대 법전원 출신의 변호사 또는 조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사급 인력이 주로 활용되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조정보고서는 총괄조정인의 명의로 법원에 제출되므로 모든 조정보고서를 총괄조정인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팩스 송신 등의 보조업무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에게 맡겼으며 업무 시작 전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 조정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였다(첨부 양식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변호사들에게도 비밀유지서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2. 조정사건 유형별 통계

구 분		건 수	비율(%)
보증금	임대보증금, 보증금, 보증채무금, 전세금반환 포함	18	22.5
건물인도	건물인도, 임대료, 임차료, 점포인도 포함	17	19.5
손해배상	수수료, 위자료 병합 사건 포함	10	11.4
대여금		8	9.1
물품대금	매매대금, 미지급금	6	6.8
양수금		4	4.5
용역비		4	4.5
임금청구	체불임금	2	2.2
청구이의		2	2.2
중개수수료		2	2.2
사용료		2	2.2

면책확인		2	2.2
추심금 등		2	2.2
관리비		2	2.2
물품대금		1	1.1
차량렌탈료		1	1.1
계금		1	1.1
토지인도		1	1.1
광고대금		1	1.1
부당이득금		1	1.1
합계		87	100

회부된 조정사건의 유형은 보증금, 건물인도, 손해배상, 대여금, 물품대금의 순이다. 유형이나 비율의 면에서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법원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민사사건들이므로 변호사나 민사소송법, 민법 등의 분야에 전문가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조정절차는 사건의 내용 자체 이상으로 당사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학의 기초지식은 본질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민사법의 기초지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민사법의 해당 부분을 찾아보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현행의 우리 민사조정법에 따라 집행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법원과 연계된 조정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Ⅲ. 중앙대 조정센터 조정사건 접수 후의 절차

1. 회부 받은 조정사건에 대한 총괄조정위원의 역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사건을 배당하면 총괄조정위원은 조정사건을 성격에 따라 분류한 후 적임이라고 생각되는 특정 조정위원에게 배당한다. 이 때 해당 사건의 조정인이 최장 조정기한인 45일을 가급적 넘기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사건을 받을 때 조정회부기일로부터 이미 2~3일이 지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인 선정에도 하루 이틀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 여차하면 일주일 정도가 낭비될 수 있다.

또한 사건을 받은 조정인도 바로 조정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으나 업무 일정 때문에 적절한 조정기일을 못 잡거나 조정당사자들이 조정기일을 늦추기를 원하거나 고의의 지연작전을 써서 조정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총괄조정인은 무엇보다 조정인을 선정하고 조정인들이 기한을 지키도록 하는 일을 행할 필요가 있다. 조정인 선정업무나 조정인 또는 당사자들이 조정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건을 지연하는 경우의 관리는 행정을 보조하는 조교들이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리

(1) 조정사건 수행 전 조정인 등의 서약서 작성

법원에서 오는 소송서류는 모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 소송 관련 자료(이른바 생기록)이므로 외부에 유출이 되거나 조정인의 무용담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때문에 소송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개별 조정인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조정사건을 관리하는 조교 등의 행정요원에게서도 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성명 :

위 본인은 중앙대 조정센터 조정위원(또는 조정보조위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이 경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한 경우 회피
7.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 . .

(서명)

(2) 조정사건 송부와 함께 조정절차 및 조정장소 안내 메일

*** 조정위원님께,

조정사건 1건을 보냅니다.

조정은 중앙대 법학관 조정센터/참법률가 지도센터(법학관 604호)에서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낸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개인공간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 사무실에서의 조정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연락하여 조정절차에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조정센터/참법률가 지도센터에서 조정할 때에는 다른 사건의 조정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당사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조정절차에 참가할 의사가 확인되면 조정절차 진행시간을 확정하기 전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인 *** 학생 ***@naver.com 010-0000-0000 에게 연락을 하여 다른 사건의 조정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양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상담방식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되므로 조정센터/참법률가 지도센터 이용시간을 예약할 필요가 없이 조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함영주 교수 메일(yjhahm3@hanmail.net)에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조정절차에 대한 안내와 조정시작 처음에 조정인들에게 조정에 대하여 안내하는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샘플도 보냅니다.

조기조정제도에 대한 법원의 안내문도 첨부합니다.

이들 문건이 조정절차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무윤리서약서에 사인한 문서 및 통장사본은 스캔 한 후 함영주 교수 메일(yjhahm3@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조정결과 보고서도 동일 메일로 보내주세요.

바쁜 일정 중에도 조정사건을 맡아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

(3) 조정인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첨부 (참고자료)

가) 모두진술 (예시문) 제공
모두 진술은 조정인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작성하여 사용할 것이지만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보다는 예시문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예시문을 제시한

다.

모두 진술 예시 (함영주 교수)

(인사하기/악수, 날씨, 교통 등에 대하여 간단한 이야기 전개.)

조정에 참석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OOO입니다. 두 분을 o 또는 oo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먼저 조정절차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은 자발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은 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시고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조정절차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북돋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정은 자율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조정을 그만 둘(call off)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정을 그만 둘 것입니다.

또한 조정절차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비밀로 하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후의 모든 절차에서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시지요? (약속 확인).

조정인인 저는 사실을 확정하거나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정의 결과와 조정절차의 진행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절차를 만들어가고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건 도달하지 않건 그로 인하여 제가 얻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중립을 지킬 것이고 당사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그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방법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정의 성공은 여러분이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발언기회에 자신의 입장(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술을 하면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재정리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을 확정하고 조정절차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조정절차 중 한 번 이상은 별도로 별석조정(개별회의)을 하겠습니다. 별석조정에서는 여러분이 저에게 비밀사항이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별석조정에서 한 말들은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알려도 좋다고 허락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필요한 경우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동석조정(합동회의)도 할 것입니다.

저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공정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정절차진행을 허락하시는지요?
오늘 양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를 승인할 최종결정권이 있으신지요? 서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경우) 그 합의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진행하는 이 조정절차에서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적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에서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기본 예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할 때 절대 말을 가로막거나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을 한 후 동일한 시간을 꼭 드리겠습니다.
(규칙 설명. 개별적으로 규칙 추가(반드시 미리 고지 필요). 예. 상대방이 말할 때 동시에 말하지 말 것. 핸드폰 받지 말 것. 나의 이야기만을 할 것 등)

이 기본 규칙에 동의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말씀 하시겠습니까? (방법 결정도 양당사자의 동의를 미리 얻을 것)

나) 조정교육에서 활용되는 조정인 평가서 제공 (참고자료)

조정인 평가서 (함영주 교수 작성)

수험자 이름_____ **채점관** _____

주제 _____

1. 조정자의 오프닝 진술

	있음	없음	해당없음
* 조정인의 역할	☐	☐	☐
■ 판결자가 아니라는점	☐	☐	☐
■ 절차진행 매니저 / 협상의 촉진자	☐	☐	☐
■ 중립성/ 불편부당함	☐	☐	☐
* 조정의 목적	☐	☐	☐
* 당사자의 역할	☐	☐	☐
조정 단계의 설명	☐	☐	☐
자발성	☐	☐	☐
■ 조정참여 자발성	☐	☐	☐
■ 합의도출에 과정의 자발성	☐	☐	☐
최종결정권(Authority)확인	☐	☐	☐
추후 다른 절차 진행가능	☐	☐	☐
비밀유지	☐	☐	☐
기본적 규칙	☐	☐	☐
조정절차 시작의 동의 구했는지 여부	☐	☐	☐

논평 & 조언

_____

_____

_____

_____

2. 첫 번째 동석조정(Joint session)

(a) 당사자들의 진술	있음	없음	해당없음
■ 의사소통스타일	□	□	□
- 당사자들의 관심사를 수용하는지	□	□	□
- 아이컨텍(눈맞춤)을 사용하는지	□	□	□
■ 상호작용을 적절히 활용하는지	□	□	□
■ 적합한 언어를 사용한 진술인지 여부	□	□	□
- 첫 번째 당사자의 진술	□	□	□
- 두 번째 당사자의 진술	□	□	□
- 적극적 경청을 하는지	□	□	□

논평_____

_____

(b) 쟁점과 공통주제의 확인			
■ 논점(쟁점, 문제점)	□	□	□
- 실체법적 쟁점	□	□	□
- 절차법적 쟁점	□	□	□
- 감정 / 관계적 쟁점	□	□	□
- 중립성	□	□	□
- 상호성	□	□	□
- 당사자간 쟁점 체크	□	□	□
■ 공통논의 주제 정하기	□	□	□

논평 _____

_____

(c) 논점 찾기			
■ 조정인이 논점을 잘 찾는가?	□	□	□
모든 의제가 별석조정에 충분히 토의되었는가 ?	□	□	□
조정인이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교환을 촉진하였는가 ?	□	□	□

논평 _____

_____

3. 별석조정

	1회			2회		
■ 별석조정의 타이밍이 적절 하였는가?	예	아니요	해당 없음	예	아니요	해당 없음
■ 처음부터 비밀유지를 강조하였는가?	□	□	□	□	□	□
■ 당사자들의 니즈(욕구)가 고려되었는지	□	□	□	□	□	□
- 별석조정의 시작단계	□	□	□	□	□	□
- 별석조정의 진행 중	□	□	□	□	□	□
■ 비밀유지가 준수되는 분위기 였는가 ?	□	□	□	□	□	□
■ 논점이 제대로 발굴 되었는가 ?	□	□	□	□	□	□
■ 내면에 숨은 쟁점을 찾아 냈는가?						
■ 가능한 해결책이 모색 되었는가?	□	□	□	□	□	□
■ 조정인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실제 가능한 방안을 고려하여 북 돋우 었는가?	□	□	□	□	□	□
■ 조정인의 의심을 받지는 않았는지?	□	□	□	□	□	□
■ 조정인이 조정을 주는 것을 자제 하였는가?	□	□	□	□	□	□
■ 조정인이 당사자들이 뒤에 있을 동석조정에 준비를 하도록 배려하였는가?	□	□	□	□	□	□
■ 이 면담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 되었는지 ?	□	□	□	□	□	□
■ 비밀유지가 마지막에 다시 체크되었는지?	□	□	□	□	□	□
■ 최종적인 사안종결권이 있는 당사자인지 체크하였는가?	□	□	□	□	□	□

논평(별석조정 1)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논평(별석조정 2)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동석조정

(a) 협상	있음	없음	해당없음
■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 하는 것을 촉진하는지	☐	☐	☐
■ 옵션개발 돕기	☐	☐	☐
■ 대안들을 추려 내여 칠판에 쓰기	☐	☐	☐
■ 합의의 실현가능성 체크 여부	☐	☐	☐
■ 해결책에 대한 조언 자제하기	☐	☐	☐

논평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b) 마무리	있음	없음	해당없음
■ 문제해결을 위한 요약하기	☐	☐	☐
■ 합의된 내용 최종요약	☐	☐	☐
■ 해결된 쟁점에 대한 제목	☐	☐	☐
■ 공식문서화 여부	☐	☐	☐

논평 _____

_____

5. 기술의 일반적 평가(별석조정, 동석조정)

	적절함	때때로	없음	해당사항 업음
■ 경청	□	□	□	□
■ 눈 맞추기 적절여부	□	□	□	□
■ 당사자의 관심 수용정도	□	□	□	□
■ 요약하기	□	□	□	□
■ 개방적(정해진 답이 없는)질문을 하였는지	□	□	□	□
■ 재구성하였는지(reframed)	□	□	□	□
■ 의심을 사지는 않았는지	□	□	□	□
■ 실현가능성 검토 여부	□	□	□	□
■ 대안의 개발을 도왔는지	□	□	□	□
■ 적절한 양의 토론 여부	□	□	□	□
■ 적절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였는지	□	□	□	□
■ 충고주기를 자제하였는지	□	□	□	□
■ 화이트보드(칠판)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	□	□	□
■ 공감대(rapport)를 형성하였는지	□	□	□	□

논평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서술평가

(a) 조정인은 자신의 조정활동을 어떻게 평가 하는가 ?

(b) 당사자들이 조정인의 조정으로 고무된 면이 있는가?

(c) 당사자들은 조정인이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다고 하는가 ?

7. 전반적인 수행에 대한 논평 (코치)

평가자 서명 **년 월 일**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교육 안내문 전달 (참고자료)

조기조정제도 안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위원용)

가. 조기 조정(Early Mediation)

1) 조기조정의 개요

○ 조기조정은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조정으로서, 조정위원 주도형 조정임

- 외부조정기관의 경우 기일 외에서 조정이 진행됨

○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3월부터 조기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중략...

별지 목차

1. 조정위원 지정결정문(양식)
2. 조기조정 회부 안내문
3. 합의서(양식)
4. 사무수행 보고서(양식)
5. 조정참가 신청서(양식)
6. 사무수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양식)
7. 당사자 주소 변경신고서(양식)

... 이하 생략...

3. 조정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정결과보고서는 조정인이 작성하여 총괄조정인에게 보내면 총괄조정인이 최종 검토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중앙지방법원에 보낸다. 조정결과보고서의 경우 사건번호는 동일사건의 확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오기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조정결과서를 받은 법원에서는 일정액의 조정인 수당을 총괄조정인에게 지급하고 총괄조정인이 개별조정인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액이 5만원, 7만원, 12만원으로 크지는 않으냐 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지체 없이, 빠짐없이, 그리고 수령 후 즉시 지급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4. 서류의 관리

서류관리를 조교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지는 않는지 달력 일정에 따라 이중점검을 하도록 한다.

사건기록부 관리는 조교에게 맡길 수 있지만, 조정결과보고서를 법원에 팩스나 메일로 보낼 때 사건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조정결과보고서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조정의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는 총괄조정인이 점검하고 조정인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다. 자칫 조정인의 보고가 법원의 재판에 예단을 심어주어 재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인들이 간혹 집행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정결과보고서나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총괄조정인은 조정합의서가 집행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중앙대 법전원 조정센터 운영에서 얻는 시사점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제도는 그 본질이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정(mediation)이 아니라 일종의 재정(裁定) 또는 재판(adjudi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말하는 조정(mediation)의 촉진적 기능,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역할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거나 폄훼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정절차가 외국의 경우와 다른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조정에 재판적 요소를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다. 조정절차가 판결과 구별이 채 되지 않는 현 시점에 조정과 중재가 혼재하는 조정절차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경우는 ADR에 대한 우리나라 제도 특유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조정(mediation)의 필요성과 제도출현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우리의 민사조정은 ADR이라기 보다 지극히 소송절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ADR 범주 내에 협상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화해를 넣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ADR의 범주는 협상, 조정, 중재로 재분류될 필요가 있다.

화해는 재판 내이든 재판 외이든 다양하게 행해지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재판절차 내의 화해는 당연히 일반 민사소송절차 내에 포함된다. 제소전화해를 포함하는 재판상화해, 화해권고결정은 물론이고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도 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대신 행하는 판결대체재판으로 오롯이 법관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제도에 모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법원연계조정기관의 조정절차 역시 법관이 연계조정기관에서 작성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문을 받아 다시 당사자들에게 보내고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간의 기간이 지나도록 당사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범주 내에 넣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우리 법원의 민사조정절차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만을 유지하고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조정제도가 세계적 수준에 비해 크게 발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법원의 판결대체방식의 조정시스템 구축이 우리나라의 장래 조정제도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송절차에서 법관이 판결문을 반드시 작성하는 방식의 재판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와는 반대방향의 것이므로 장려할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쓰지 않는 판결대체형 법원조정도 방향설정만큼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조정절차에 많이 뒤쳐져 있는 우리의 사법현실에서는 법원의 판결대체방식의 조정절차운영만으로도 결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법원연계형 외부조정기관에서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의 규정 때문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부분을 이외의 영역에서 최대한 당사자의 자율성, 자발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운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부조정기관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운영할 때 해당 조정사건의 당사자들은 조정합의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현행의 법의 효력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진정으로 합의한 것이기에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률가에게 분쟁의 종결보다 분쟁의 해결을, 소송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검투사이기보다 평화의 사도(peace maker)가 될 것을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분쟁해결론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